

○ 국토교통부고시제2022-524호(건설신기술 지정 중 정정)

관보 제20331호(2022. 09. 13.)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-510호(건설신기술 지정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2년 09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4. 신기술품셈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4 584 515 1966"> <thead> <tr> <th>시공절차 및 주요공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h>신기술 품</th> </tr> <tr> <td>1. 차수재 포설 (생략)</td> </tr> <tr> <td>2. 토사 포설 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공절차 및 주요공정	(생략)	신기술 품	1. 차수재 포설 (생략)	2. 토사 포설 (생략)	<p>4. 신기술품셈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82 524 970 1915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시공절차 및 주요공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4">(정정사항 없음)</td> </tr> <tr> <th colspan="4">신기술 품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4">1. 차수재 포설 (정정사항 없음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2. 토사 포설 (정정사항 없음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3. 부직포 포설 (m<sup>2</sup>당)</td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규격</th> <th>단위</th> <th>수량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인력</td> <td>방수공</td> <td>인</td> <td>0.001</td> </tr> <tr> <td>보통인부</td> <td>인</td> <td>0.001</td> </tr> <tr> <td>장비</td> <td>크레인</td> <td>hr</td> <td>0.002</td> </tr> <tr> <td>재료</td> <td>부직포</td> <td>보호용 m<sup>2</sup></td> <td>1.1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[주]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부직포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② 본 품에는 소운반, 포설, 고정, 연결 및 접합, 이음부처리, 정리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. ③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,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.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작업위치 및 높이 등)에 따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. 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, 공기순로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4. 사석 포설 (m<sup>2</sup>당)</td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규격</th> <th>단위</th> <th>수량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인력</td> <td>보통인부</td> <td>인</td> <td>0.005</td> </tr> <tr> <td>굴삭기</td> <td>1.0m<sup>2</sup> hr</td> <td>0.07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[주]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사석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② 본 품에는 사석 부설 및 고르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5. 기 타</p>	시공절차 및 주요공정				(정정사항 없음)				신기술 품				1. 차수재 포설 (정정사항 없음)				2. 토사 포설 (정정사항 없음)				3. 부직포 포설 (m <sup>2</sup> 당)				구분	규격	단위	수량	인력	방수공	인	0.001	보통인부	인	0.001	장비	크레인	hr	0.002	재료	부직포	보호용 m <sup>2</sup>	1.1	[주]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부직포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② 본 품에는 소운반, 포설, 고정, 연결 및 접합, 이음부처리, 정리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. ③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,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.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작업위치 및 높이 등)에 따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. 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, 공기순로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4. 사석 포설 (m <sup>2</sup> 당)				구분	규격	단위	수량	인력	보통인부	인	0.005	굴삭기	1.0m <sup>2</sup> hr	0.070	[주]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사석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② 본 품에는 사석 부설 및 고르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				<p>“4. 신기술품셈” 중 “신기술 품” 중 “3. 부직포 포설” 및 “4. 사석 포설” 추가</p> <p>“5. 기타” 추가</p>
시공절차 및 주요공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기술 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차수재 포설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토사 포설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공절차 및 주요공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정정사항 없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기술 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차수재 포설 (정정사항 없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토사 포설 (정정사항 없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부직포 포설 (m <sup>2</sup> 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규격	단위	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력	방수공	인	0.0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보통인부	인	0.0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비	크레인	hr	0.0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료	부직포	보호용 m <sup>2</sup>	1.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주]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부직포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② 본 품에는 소운반, 포설, 고정, 연결 및 접합, 이음부처리, 정리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. ③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,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.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작업위치 및 높이 등)에 따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. 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, 공기순로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사석 포설 (m <sup>2</sup> 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규격	단위	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력	보통인부	인	0.00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굴삭기	1.0m <sup>2</sup> hr	0.0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주]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사석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② 본 품에는 사석 부설 및 고르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.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